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368
----------	------

제안년월일 : 2021년 4월 28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63호)과 이광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264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현재 수도사용자들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과 재설치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 경우 약 84%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있고,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

의 비용을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용자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들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나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수도계량기가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계량기의 시험)”을 “(수도계량기의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도계량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로, “시의 부담으로”를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탈되어 동과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를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

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 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계량기의 시험) ① ~ 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p>	<p>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u>시의 부담으로</u>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u>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u></p> <p>③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u>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u> -----.</p> <p>----- 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